#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661 제출연월일: 2024. 12. 18.

제 출 자:정 부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 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"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: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
- 2.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: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
- 3.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: 영업을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조(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	제12조(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		
류 제조의 신고 등) ①·② (생	류 제조의 신고 등) ①·②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	3		
(이하 "인삼류제조업자"라 한			
다)는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	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		
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		
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	<u> 정하는 기간</u>		
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			
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			
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			
이내에 시장・군수에게 신고하			
여야 한다.			
<u>&lt;신 설&gt;</u>	1.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		
	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		
	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		
	경우: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		
	<u>터 20일 이내</u>		
<u>&lt;신 설&gt;</u>	2.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: 휴		
	업한 날부터 30일 이내		
<u>&lt;신 설&gt;</u>	3.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영업을		
	재개하는 경우: 영업을 재개한		
	<u>날부터 30일 이내</u>		
④ ~ ① (생 략)	④ ~ ① (현행과 같음)		